



금융감독원

보도자료



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 행복하게

보도	2025.9.25.(목) 조간	배포	2025.9.24.(수)		
담당부서	보험사기대응단 특별조사팀	책임자	부국장	박항신	(02-3145-8880)
		담당자	선 임	양길남	(02-3145-8735)

**음주운전 은폐, 입원 중 택시영업, 허위진술 등은
명백한 자동차 보험사기로 단호히 거절하셔야 합니다!**

- 일상생활 속 보험사기 주요 사례 및 대응요령[제3편]

I. 개 요

- 자동차보험은 운전자 모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으로, 교통사고 피해의 신속한 배상을 통해 국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
 - 이를 악용하여 자동차 보험사기 공모로 직접적인 피해를 유발하거나, 사고조작·허위청구 권유 등 선량한 소비자를 유혹하는 사회적 폐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.
- 금융감독원은 사고조작 등 자동차 보험사기 주요 유형을 연속기획물 제3편*으로 알려드리니, 일상 속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주의를 당부드립니다.
 - * [제2편] 일상생활 속 실손보험 보험사기 관련 주요 사례 및 대응요령(9.9 보도자료)
 - 국민들께서는 교통사고시 잠재적 보험사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요 보험사기 사례 및 대응요령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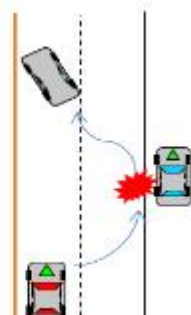
구분	자동차 사고조작 등 허위진술 보험사기 유형(5건)
1	사고부담금 미납(회피) 목적 음주 사고 은폐
2	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고의사고 유발
3	미성년자, 노모 등 가족 동승 고의사고 유발
4	경미사고 환자의 허위입원 중 택시영업
5	영업목적 은폐 후 가정용 이륜차보험으로 보험사고 신고

Ⅱ. 자동차보험 사고조작 등 보험사기 사례

사례 ① 사고부담금 미납(회피) 목적 음주 사고 은폐

- A씨는 음주운전(혈중 알콜농도 0.08% 이상)으로 차량을 추돌하였고, 이는 면허취소(도로교통법) 및 형사조치 대상이 되는 '12대 중과실 사고'(교통사고처리특례법)에 포함됩니다.
- A씨는 음주사고시 납부하여야 하는 사고부담금*을 회피할 목적으로, 사고 현장에서 음주가 적발된 사실을 보험회사에 밝히지 않고 일반적인 사고처럼 진술하여 사고내용을 조작하였습니다.
- * 음주운전자는 (사망) 1억5천만원, (상해) 3천만원, (대물) 2천만원 등 의무보험 한도내 지급금을 사고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함(약관, 자배법 시행규칙 §10)
- 甲 보험회사는 해당사고 조사 중 경찰의 A씨에 대한 음주사실 적발을 확인하고, 해당 사고의 사고부담금을 납부토록 A씨에게 통보하였습니다.
- A씨는 블랙박스 사고화면에서도 주취 상태임이 추정됨에도 불구하고, 초기사고 접수시 음주상태의 사고임을 부인하는 등 사고은폐 혐의가 입증되어 경찰에 보험사기 혐의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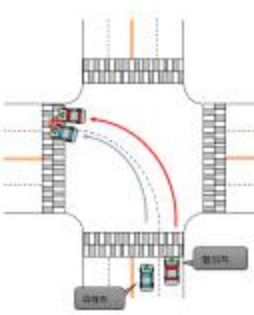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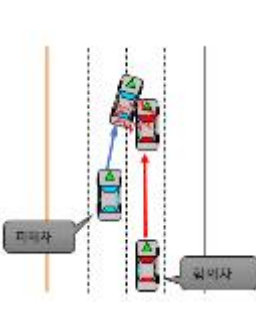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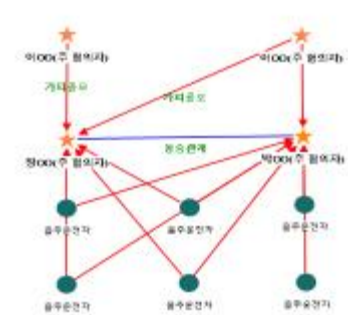
[참고1] 음주운전 교통사고 은폐 사례

	경찰청 교통사고 보고서 당사의 요청에 따라 보험계발원을 통하여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교통사고조사 경보입니다.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595 1711 973 1942"><tr><td>사고유형</td><td colspan="2">추돌차</td></tr><tr><td>사고원인</td><td colspan="2">음주운전(혈중알콜농도 0.08% - 연승면허0.03% 이상/19.6.24)전 0.1% 연승0.05%이상)</td></tr><tr><td>피해내용</td><td>인파 : 사망</td><td>물파 : 0 천원 상당</td></tr><tr><td>사고내용</td><td colspan="2">음주차량이 운행 중, 전방 것길에 주차된 대차와 뒷면의 부딪힘 충격 후 좌전도 등.</td></tr></table>	사고유형	추돌차		사고원인	음주운전(혈중알콜농도 0.08% - 연승면허0.03% 이상/19.6.24)전 0.1% 연승0.05%이상)		피해내용	인파 : 사망	물파 : 0 천원 상당	사고내용	음주차량이 운행 중, 전방 것길에 주차된 대차와 뒷면의 부딪힘 충격 후 좌전도 등.		 (사고기록) "주차중 차량 충격 후 전도", "최초에는 음주없이 귀가중 사고라고 주장했으나, 음주운전으로 적발"
사고유형	추돌차													
사고원인	음주운전(혈중알콜농도 0.08% - 연승면허0.03% 이상/19.6.24)전 0.1% 연승0.05%이상)													
피해내용	인파 : 사망	물파 : 0 천원 상당												
사고내용	음주차량이 운행 중, 전방 것길에 주차된 대차와 뒷면의 부딪힘 충격 후 좌전도 등.													
[사고 차량 전도 상태]	[적발 내용 예시]	[사고내용 약도 기술]												

사례 2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고의사고 유발

- 직업이 일정하지 않았던 B씨는 급전이 필요한 친구 C씨 등과 함께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유흥가·주점 인근에서 음주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고의사고 계획을 세우고,
- B씨는 공모한 C씨와 함께 계획된 장소에서 고의사고를 유발한 뒤 합의하는 방식*으로 교통사고의 우연성을 조작하였습니다.
- * ①음주운전 무마조건으로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거나, ②협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음주운전자의 불리함을 악용
- 乙 보험회사가 유흥가 인근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한 점을 의심하여 조사한 결과, B씨 일당과 관련하여 음주운전자 대상 사고가 다수 발생하였음을 확인했고,
- 보험사기 전력 및 사고이력 조회를 통해 B씨와 C씨는 가·피해자 역할을 분담하는 등의 고의사고 공모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.
- 이에 乙 보험회사는 교통사고를 접수한 뒤, B씨가 경찰신고 없이 신속하게 합의하거나, 충돌 가능성을 알고도 회피하지 않은 사고 특성을 영상분석에서 확인하는 등 고의사고 혐의를 입증하여 경찰에 혐의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.

[참고2] 음주운전자 대상 고의사고 유발사례

			
[유흥가 인근 사고내용]	[경찰 출동 현장상황]		[혐의자 관계]

사례 3 미성년자, 노모 등 가족 동승 고의사고 유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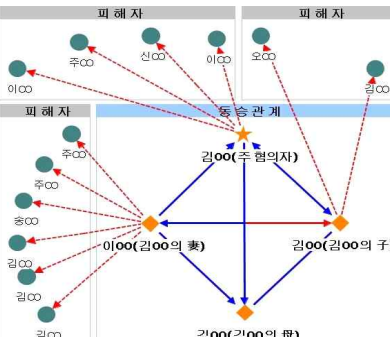
- 부부사이인 D씨와 E씨등은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차량의 측면·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계획하고, 노모(58년생) 또는 미성년 자녀(06,07년생)를 동승시켜 교통사고를 야기*하였습니다.

* 실선 좌측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의 방향지시등을 확인하고도 일부러 감속하지 않고 후미 추돌하거나, 불법유턴 차량 방향으로 직진하여 측면 충돌

- 혐의자는 합의금 목적으로 사고를 야기, 미미한 충격에도 노약자의 취약함을 주장하며 상대를 협박하거나, 사고경위 및 상해정도 등 허위 진술을 동승자에게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고를 조작하고,
- 丙 보험회사의 사고 조사시 상대방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사고라며 사고의 원인과 피해에 대하여 허위·과장진술하였습니다.
- 금융감독원은 사고영상과 탑승자 사고경위 진술을 대조하여 고의 사고가 빈번함을 확인하고, 가족을 동승시킨 혐의자들의 허위진술 및 고의사고 사실을 비교 검증하여 경찰에 통보하였습니다.
- 또한 경미사고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의료비를 청구한 혐의자들에 대하여 ‘상해위험 분석*’을 거쳐 실제 충격은 미미하였고, 심각한 상해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.

* 보험개발원에 누적된 충돌시험 데이터를 바탕으로, 실제 사고차량에 가해진 충격을 분석, 신체 상해 및 유의미한 속도변화가 있는지 판단하는 절차

[참고3] 가족동승 고의사고 보험사기 사례

		
[고의사고 영상]	[동승자 연관성 확인]	[상해위험 분석 예시]

사례 4 경미사고 환자의 허위입원 중 택시영업

- 최근 교통사고를 당한 택시기사 F씨는 통원 수준의 경미사고도 수속만 하면 입원처리를 해준다는 병·의원 상담실장 G씨를 만나,
 - 동 병원의 입원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, 치료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며 입원을 권유받았습니다.
 - 동 병·의원은 F씨가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비를 청구하였고, 또한 환자는 입원기간 중 택시영업을 하였음에도 허위 입원서류를 발급받아 장기보험금도 수령하였습니다.
 - 금융감독원은 허위입원 혐의사실*의 증거를 확보하고 허위입원이 확인된 택시기사들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유가보조금 부당수령(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) 혐의로 수사의뢰하였습니다.
- * 입원 중 택시영업을 한 사실, 또한 택시 운행 후 유가보조금을 편취한 사실

[참고4] 주요 허위입원 등 보험사기 사례

 2차 운전 2024-09-22 22:28:25 입원 병원 2024-09-22 19:43:14 2024-09-22 22:43:00 1차 운전 2024-09-22 19:18:00 [택시영업 운행확인]	 보조금, 보상금, 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등(허위청구, 과다청구, 목적외사용, 오지급) 하면 부정이익등 환수와 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, 명단공표를 합니다. [입원 중 유가보조금 편취]
---	---

사례 5 영업목적 은폐 후 가정용 이륜차보험으로 보험사고 신고

□ 배달대행업 기사 H씨는 평소 배달영업용으로 사용하던 이륜차의 보험료가 높게 산정*되자, 동 비용을 절감하고자 본인의 이륜차를 비영업용 차량(출퇴근·가정용)으로 丁 보험회사에 허위등록 후, 계속 배달업에 종사하였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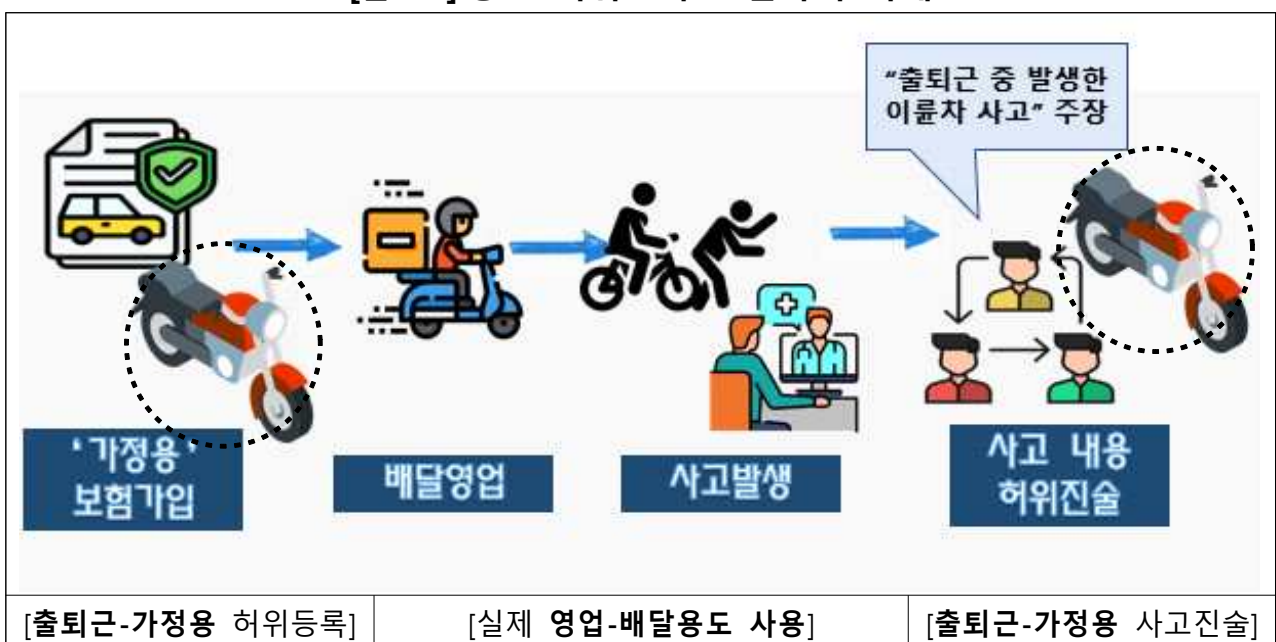
* 예) 영업용 이륜차(오토바이) 보험료가 약 187만원으로 산정되자 이륜차의 용도를 가정용으로 고지하여, 보험료 약 44만원의 가정용 이륜차보험에 가입

○ 그러나 배달영업 중에 보행자를 충격하자 H씨는 교통사고처리를 위하여, '출퇴근' 중 교통사고 발생으로 사고원인 및 내용을 조작하였습니다.

□ 丁 보험회사는 H씨의 이륜차 블랙박스를 조사한 결과, 해당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륜차에 일반적 출퇴근 용도와는 맞지 않는 배달 컨테이너와 배달물품(음식, 영수증 등)을 확인하였고,

○ 丁 보험회사는 가정용 이륜차보험의 목적과 다르게 H씨가 영업 목적으로 가입한 사실과, 출퇴근 사고라는 허위의 사고내용접수 등 보험사기를 확인하여 경찰에 이를 통보하였습니다.

[참고5] 용도 허위고지 보험사기 사례



Ⅲ. 관련 보험사기 규모 및 처벌 법규

- **(보험사기 규모)** '24년 고의충돌 등 사고내용을 조작하여 발생한 자동차보험 허위청구 금액은 약 824억원 규모로써, 그 금액이 증가('22년 534억원, '23년 739억원)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.

※ 허위입원 등 병원의 치료비 과장청구금액은 2024년 약 40억원 규모로 발생

- 또한, 영업목적·용도 미고지를 포함한 보험가입시 고지의무 위반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'24년 약 706억원 규모로 발생하였습니다.

- **(처벌법규)** 자동차 보험사기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(제8조) 위반으로서,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합니다.

- 한편, 허위입원서류 작성과 같이 사문서 위조가 인정되는 경우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(제231조)에 해당되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도 가능합니다.
- 병·의원의 허위진단 및 진료기록부 위조는 의료법상 허위기록 작성행위(제88조)에 해당되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, 의료인의 1년 이내 자격정지(제66조)도 가능합니다.
- 입원기간 중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경우 여객운수사업법상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(제90조), 해당 보조금 환수 또는 1년 이내의 지급정지(제51조의2)도 가능합니다.

[참고]대법원 양형기준 개정 주요내용('25.7.1.)

- ① 사기범죄 적용범위에 보험사기 범죄를 추가하고 유형을 분류
- ② 사기범죄의 형량범위를 상향하여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 가능*
* 예) 300억원 이상 조직적 사기의 경우 최대 권고형량을 무기징역으로 상향
- ③ '고지의무 불이행'을 통한 보험사기 행위를 형의 특별감경인자에서 삭제
- ④ 보험업종 등 전문직 종사자의 직무수행 기회를 이용한 범행 가담을 형의 특별가중인자(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)로 추가

Ⅳ. 자동차 보험사기 소비자 대응 요령

☑ 경찰신고 없이 합의를 유도하는 보험사기 일당에 단호히 대처하세요!

- ◆ 자동차 고의사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사고과실이 크더라도, 경찰·보험회사의 도움을 받기 전까지는 교통사고 상대방과 성급하게 합의를 결정해서는 안됩니다.
 - 반드시 블랙박스 및 사고현장 사진,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세요
- ※ 하지만, 음주운전은 언제나 가족·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범죄임을 기억해주세요

☑ 교통사고 허위진술에 대해서는 보험사기로 조사받게 되며, 가담정도에 따라 진술자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

- ◆ 가족·지인(운전자 등)의 부탁으로 교통사고 경위를 허위로 진술하면, 고의사고 공범으로 조사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반드시 거절하세요
 - 또는 당시 차량에 동승하지 않았음에도, 치료비 및 합의금 목적으로 동승한 것처럼 진술하는 것도 보험사기 조사 대상에 해당합니다.
- ※ 아울러 보험사기 가담범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숙지하세요('24.8.14. 시행)

☑ 교통사고 후 허위입원 및 치료 제안·권유를 받게 되면 단호히 거절하고 금감원 등에 제보하세요.

- ◆ 만약 병원 직원이 허위입원을 권유하거나, 우연히 타인의 허위입원을 알게된다면 금감원 및 보험회사에 신고해 주세요.
 - 허위로 입원하고 입원보험금 및 교통사고 합의금을 편취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사기이며, 입원 중 외출·외박은 엄격하게 관리됩니다.

☑ 보험가입시 이륜차 용도를 정확하게 알려 주셔야 합니다.

- ◆ 가정용 이륜차 보험은 배달 중 사고발생시 가입용도 불일치로 보험금이 지급거절되고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용도에 맞게* 가입하셔야 합니다.
 - * 퀵서비스(유상운송), 배달앱 이륜차(개인사업자), 음식점 소유 배달이륜차(딜리버리) 등
- ※ 용도 변경시에도 알려주셔야 하며, 유상운송 이륜차는 배달플랫폼 온·오프 보험을 이용하거나 기타 할인특약으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V. 향후 계획 및 당부사항

- 향후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될 우려가 높은 유형에 대하여 보험소비자의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을 지속 발굴하는 한편,
 - 자동차 보험사기 관계기관인 경찰청·손해보험협회·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·전국렌터카공제 등과 긴밀히 협업하여 매년 다양화되는 신종 자동차 보험사기에 적극 대처하고,
 - 사고이력을 은폐하는 등 지능화되는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하여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민생침해 보험범죄를 근절하겠습니다.

[조직형 보험사기(알선·유인·권유행위 포함) 금액별 가중처벌]

- ▶ (가중처벌) 보험사기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: 3년 이상 징역,
보험사기이득액 50억원 이상 :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
보험사기 상습범 : 형량의 50% 가중처벌
- ▶ (범죄조직) 보험사기이득액 300억원 이상 : 최대 무기징역으로 상향

- 아울러, 비상식적인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『보험사기 신고센터』에 적극 제보를 부탁드립니다.
 - 신고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회사가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드립니다.

[보험사기(알선·유인·권유·광고행위 포함) 신고 방법]

- ▶ (유선 상담·신고) ☎1332 - 4번(금융범죄) - 4번(보험사기)
 - ▶ (인터넷 접수)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 상단
『민원·신고』 → 『불법금융신고센터-보험사기신고』
 - ▶ (우편 접수)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
- ※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내 『보험사기 신고센터』도 운영
(금감원 홈페이지의 보험사기 신고 화면에서도 접속 가능)